

4.1.24 체육관사용규정

제정 2001. 09. 10.

개정 2005. 01. 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규정은 초당대학교 체육관(이하 “체육관”이라 한다.)의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사용 및 관리, 학과 학생들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운동부의 육성을 위해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체육관은 본교 학생의 체육수업과 운동부의 과외활동 및 체력단련장으로 사용한다.

제2장 운영

제3조(관장) 관장은 사회체육학과장이 갖는다.

제4조(운영 및 관리) ①체육관은 사회체육학과에서 운영하며 각종 기구와 시설물보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체육관 운영계획
2. 체육시설 확충 및 시설물·기구보존에 관한 사항
3. 체육실기 수업 및 운동부 특별활동을 위한 체육관 사용기간 및 시간 배정

② 체육관의 시설유지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리과에서 담당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체육관의 내외부 시설과 건물의 보수에 관한 사항
2. 건물의 사용 및 대여에 관한 사항
3. 기타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자문위원) 관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체육관 운영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3장 체육관 사용 및 대관

제6조(사용원칙) ①체육관은 본 대학 사회체육학과 수업시간표에 의한 체육활동을 위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 대학팀 과 외부팀 과의 친선 및 연습을 위한 체육관 사용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회체육학과의 책임 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절차 및 승인) ①재학생, 교직원, 운동선수 등의 교수-학습, 학교행사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7일전에 사용허가신청서를 사회체육학과에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② 외부기관 및 단체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10일전에 사용허가 신청서를 관리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과장은 관장에게 실습 및 사용여부를 확인한후 허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체육기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회체육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기타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의 사용을 허가 할수 있다.

제8조(사용승인 정지 및 취소) ①사용승인 신청시의 목적과 달리 사용할 때

- ②시설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을 때
- ③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관장과 관리과장이 합의결정

제9조(대관) 체육관의 대관은 교육, 체육, 문화등에 관계되고, 학교발전에 기여 할수 있는 행사에 한하여 이루어지며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본 대학 학생 및 교직원의 체육행사
- ② 본 대학 주관행사
- ③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0조(대관승인 및 보상) ①시설물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나 관리상대관이 부적당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않는다.

- ② 개강중일때에는 대외집회 및 단체행사 대관을 허가하지 않는다.
- ③ 체육관 사용 중 시설물 및 설비를 파손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①외부기관 및 단체에서 체육관을 대여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수업 및 본 대학 행사는 제외한다.
- ③ 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3일전까지 본 대학 관리과에 사용료등 관계비용 전액을 별첨1에 근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에 대한 규정은 이를 따로 정한다.
- ④ 사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시설물이나 기구에 파손이 있을때에는 즉시 보수 또는 변상 하여야 한다.
- ⑤ 냉 · 난방시설 사용비용은 별도로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2조(사용료 처리) 체육관 운영에 의한 관리비는 체육관 관리에 필요한 제 경비에 사용하도록 한다.

제13조(준수사항) 본 체육관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체육관 출입시 운동화착용(구두착화금지)
2. 흡연, 음주, 음식물의 반입을 절대 금한다.
3. 시설물, 비품, 장비등 훼손주의
4. 체육관내 질서유지
5. 기타 본교에서 지시하는 사항

제14조(안전사고) 이용중 야기된 안전사고는 당사자 및 이용단체의 책임으로 한다.

제15조(확성기 사용금지) 확성기를 통한 음악, 구호등의 방송을 절대 금한다.(단, 단순 안내방송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제16조(부대설비 및 청소)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과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 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설치한 설치물과 그 철거비용은 모두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중 쓰레기를 수거하여야 한다.

제17조(손해보상) 사용자는 건물, 시설물, 부속물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일체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보칙) 규정에 없는 사항은 본교 시설물사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첨1. <체육관 사용료 징수 기준>

(단위 :원)

시 간 인원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50명이하	50,000	70,000	90,000	110,000	130,000	150,000
50명 이상	100,000	120,000	140,000	160,000	180,000	200,000
100명 이상	150,000	170,000	190,000	210,000	230,000	250,000
200명 이상	200,000	220,000	240,000	260,000	280,000	300,000

별첨2. <체육관 사용 허가 신청서>

체육관 사용 허가신청서					
사용자		사 용 단 체		인 원	
연락처		대표자		연락처	
사용일시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협 조 사 항			
행사내용 (목적)					
신청시설		사용료	원	납입 확인	
신청기구		기 타			
<p>위와 같이 체육관 사용 허가신청을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20</p> <p>신 청 인 : (서명)</p> <p>초당대학교 사회체육학과장 귀하</p>					